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체육지도자 등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수 또는 체육시설업자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성별·나이·종목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중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461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를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의 효율적 수립·시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법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
5. 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한 교통의 차단
7.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공개)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지역·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한 조치를 지시한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한 국가·지역·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학술·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발생하였거나”를 “발생했거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결과와 제2항에 따른 방역교육 실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매물하여야”를 “매물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하여야”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13조제2항”을 “제3항 전단”으로,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와 사후관리 등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제1항제9호”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모사전송(FAX)”을 “팩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8호제1항제11호”를 “제28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신청 등)”을 “(검역시행장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시행장으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을 지정하려면”을 “시설은”으로, “인정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인근 수산생물 양식시설에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를 “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하는”을 “검역시행장을 지정했음”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를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을 “검역시행장을”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각각 “검역시행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역장소를”을 “검역시행장을”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검역구역의 오염방지과 출입통제, 소독 및 임상실험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절차, 시설·장비 등의 지정 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를 “수입위험분석을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에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험분석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범위의 변경 여부

제37조의2제2항 중 “2개월”을 “1개월”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7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수리하였을”을 “수리했음”로, “돌려주어야”를 “돌려줘야”로 한다.

제37조의13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같다)하여야”를 “같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37조의16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돌려주어야”를 “돌려줘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였을”을 “했을”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쪽 제1호 중 “지닌 자가”를 “지닌 사람”으로, “위반하였을”을 “위반했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제3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제3항 전단”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2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3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2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3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제목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4항”으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하며,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한다.

-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
-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3호서식의 제목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검역시행 장소명”을 “검역시행장 명칭”으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합니다”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4호의9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10서식 앞쪽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11서식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12서식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중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관한 부분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각각 “국립수산물과학원장”으로 본다.

제3조(수산물방역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산물질병의 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제5조제4항 및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령한 고시로 본다.

[별표 4]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제30조제3항 단서 관련)

모형	규격	용도
	<p>지름</p> <p>바깥 원: 40mm</p> <p>안의 원: 25mm</p> <p>글자의 굵기</p> <p>안의 원: 1mm</p> <p>바깥 원: 1mm</p>	<p>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없음을 표시</p>

[별표 4의2]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2조 제6항제3호	지정취소		
다.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각·매몰등을 해야 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법 제32조 제6항제4호	지정취소		
라.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6항제2호	업무정지 60일	업무정지 180일	지정취소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제 호

수산생물방역관증

사진

(2.5cm×3cm)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56mm×80mm [백상지 80g/m²]

(뒤쪽)

수산생물방역관증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시·도지사

1. 이 증표를 지닌 사람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질문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어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내외에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정보공개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산생물방역기관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생물질병 방역업무의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462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결과를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3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현지조사,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및 해양치유시설의 분포 현황
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